

이 자료는 **7월 6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7월 5일(화) 12시]

배포일	2022년 7월 4일(월) (총 12쪽)	담당부서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담당자	최난주 팀 장 (043-880-5691) 이다래 대 리 (043-880-5695)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등장과 합리적 소비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로 중고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이 많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중고거래 거래액 규모 : ('08년) 약 4조원 → ('20년) 약 20조원으로 추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0)

** (주)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주)중고나라, (주)헬로마켓

[조사 개요]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유통 모니터링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조사방법) 1년간 유통된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 기간 : 2021.5. ~ 2022.4. •(조사기간) '22.4.6.~4.29. •(품목) 종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 9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최근 3개월 간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22.4.6.~4.2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89%p

* (주)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주)중고나라, (주)헬로마켓

**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및 영업 허가 없는 개인의 판매가 불가한 물품 중 중고거래가 활발한 대표 품목 선정

□ 중고거래 소비자 불만,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가 32.4%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불만이 32.4%(9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 거부' 13.5%(376건),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3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 ('19년) 917건 → ('20년) 986건 → ('21년) 887건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지부담)

□ 온라인 판매 또는 개인 판매가 불가능한 품목이 다수 유통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능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9종*을 선정한 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되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되었다.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불가품목 중 종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 9종을 선정 후 아래 표 세부 품목으로 한정하여 모니터링 함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결과]

구분	품목	세부 품목	유통건수	거래불가 사유
생활용품류 (196건)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	62	판매소 허가 필요
	화장품	홍보·판촉용 화장품, 소분 화장품	134	온·오프라인 판매금지
식품류 (5,050건)	기호식품	담배, 주류	5	온라인 판매금지*
	수제식품	수제청	16	영업 허가 필요
	건강기능식품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5,029	영업 신고 필요
의약품류 (80건)	의약품	철분제, 제산제, 파스	76	온라인 판매금지
	동물약품	심장사상충약	4	온라인 판매금지
의료기기류 (108건)	시력교정용 제품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45	온라인 판매금지
	의료기기	모유착유기, 의료용흡인기, 창상피복재	63	판매업 신고 필요
합계			5,434	-

* 주류는 전통주 외에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76건) 등의 순으로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절반 가까운 소비자가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이 있음을 몰라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플랫폼 2곳(당근마켓, 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품목을 알기 어려웠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당근마켓은 게시글 작성 시 거래불가품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개선 중임을 회신함.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약칭*·은어·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아 품목명 외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시) 쓰레기봉투→쓰봉, 전자담배→전담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자와 거래 시 청약철회 가능해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중 3곳(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은 사업자(전문판매업자)의 판매를 허용하고,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판매 코너를 두어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의 판매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동종품목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동일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종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일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등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의 사업자 지위 여부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자일 경우 신원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중고거래 이용 품목은 '생활용품'이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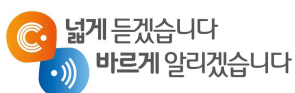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주방·가사용품 등 '생활용품'이 21.1%(24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 16.2%(186명), '의류' 13.7%(15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가 3.96점(5점 척도)으로 가장 컸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가 3.89점,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가 3.35점으로 뒤를 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안전결제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 30.0%(345명),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330명), '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업자 차단' 13.7%(158명) 등을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불가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면거래를 하거나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불임 >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

1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불만 현황

- (소비자불만 건수) 최근 3년간(2019~2021)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2,790건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최근 3년간(2019~2021)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9	2020	2021	계
건수	917	986	887	2,790
증감률	-	7.5	-10.0	-

- (소비자불만 유형)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함'이 32.4%(9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거부 관련'이 13.5%(376건)의 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유형]

[단위: 건, (%)]

구분	계(비율)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903 (32.4)
주문취소 시 환불거부 관련	376 (13.5)
구매 후 미배송, 일방적 계약취소	322 (11.5)
거래대금 지급 지연	137 (4.9)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불만	129 (4.6)
가품의심	109 (3.9)
안전거래 사칭 등 결제 관련 사기	64 (2.3)
배송 지연	31 (1.1)
개인정보 관련 피해	14 (0.5)
거래 당사자 간 연락 지연	11 (0.4)
기타*	201 (7.2)
단순 문의 등 유형 구분이 불가한 경우	303 (10.9)
B2C 거래 관련 불만	190 (6.8)
계	2,790 (100.0)

* AS관련 불만, 배송비 부담 관련 불만, 가격 책정 관련 불만 등

※ 소비자 불만에는 여러 불만 사항이 중첩되어 있으나, 불만 내용 중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유형 분류

□ (주요 소비자 불만 사례)

○ (사례1) 고지한 정보와 상이한 상품 상태

소비자 A씨(남, 40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구매함. 판매자는 2017년식 노트북이라고 하였으나 노트북을 받아 확인해보니 2015년식임을 알게 되어 판매자에게 이의제기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사례2) 주문취소 시 환불거부 관련

소비자 B씨(남, 불명)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용 라이트를 구입하고 구입 대금을 입금함. 배송이 시작되기 전 B씨는 라이트가 필요 없어서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 및 구매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함.

○ (사례3) 구매 후 미배송, 일방적 계약취소

소비자 C씨(여, 50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했는데,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를 하면 할인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고 배송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입금 후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물품도 수령하지 못하여 소비자 C씨는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판매자를 신고하였음.

2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결과

-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거래불가품목 관련 운영현황 및 유통실태
*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 **(조사기간)** 2022. 4. 6. ~ 2022. 4. 29. (25일간)
- **(모니터링 품목)**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는 개인의 판매가 금지된 품목* 총 9종
* 관련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거나,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판매가능한 물품 중 중고거래가 활발한 대표 품목 9종(총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제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을 선정
- **(모니터링 방법)** 품목별 키워드* 검색 후 금지 품목 유통 게시물 확인
* 최근 1년간(2021.5~2022.4.) 판매중/판매완료 게시물을 대상으로 세부 품목명 및 변형키워드(약칭,은어, 상품명 등)를 검색하여 유통 게시물을 확인
** 중고나라의 경우 앱과 카페의 운영현황·판매물품이 달라 운영현황은 앱·카페를 기준으로,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은 카페를 기준으로 함.

[거래불가품목 관련 운영현황]

구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정보제공 실태	거래불가품목 고지	○	○	○	○
	게시글 작성 시 금지품목 안내 여부	x*	○	○(앱),x(카페)	x
거래차단 실태	게시글 삭제	○	○	○	○
	검색 차단 기능	○	○	○(앱),x(카페)	○
	키워드알림 차단 기능	○	○	○(앱),x(카페)	○
	판매자 제재조치	○	○	○	○

* 당근마켓은 게시글 작성 시 거래불가품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개선중임을 회신함.

- (정보제공)** 조사대상 플랫폼 4곳은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였고, 게시글 작성 메뉴에서는 플랫폼 2곳(번개장터, 중고나라)만 불가품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함.
 - 공지사항에서만 불가품목을 안내하고 게시글 작성 시 안내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불가품목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
 - * (소비자 인식조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불가품목이 존재함을 인지하는 응답자가 54.1%,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는 45.9%로 나타남.
- (거래차단)** 조사대상 플랫폼 4곳은 거래불가품목 게시글이 등록되었을 때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고, 검색차단 및 키워드알림 차단 기능을 운영중임.

[거래불가품목 거래차단 기능 예시]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결과]

구분	품목	세부 품목	유통건수	
생활용품류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	62	196
	화장품	홍보·관촉용 화장품, 소분 화장품	134	
식품류	기호식품	담배, 주류	5	5,050
	수제식품	수제청	16	
	건강기능식품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5,029	
의약품류	의약품	철분제, 제산제, 파스	76	80
	동물의약품	심장사상충약	4	
의료기기류	시력교정용 제품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45	108
	의료기기	모유착유기, 의료용흡인기, 창상피복재	63	
합계				5,434

- (유통실태) 9개 품목에 대한 유통 게시물 수는 총 5,434건으로 확인
- (품목별) 건강기능식품(5,029건), 화장품(134건), 의약품(76건) 등의 순
 - (건강기능식품)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개인 판매가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3종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었음.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 ※ 2021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한 원료는 약 400종, 유통되는 품목은 약 28,000개이며 (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 중 소비자 접근성이 좋고 및 다소비 되는 품목으로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3종을 선정함.
 - (화장품) 홍보·관촉용으로 제조·수입된 화장품 및 소분된 화장품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총 134건의 유통 게시물이 확인되었음.
 - *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 (의약품)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총 76건의 유통 게시물이 확인되었음.
 - *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거래불가품목 유통 예시]

건강기능식품(유산균) 판매	화장품 샘플 판매
 <p>건강기능식품(유산균) 판매</p> <p>75,000원</p>	 <p>화장품 샘플 판매</p> <p>10,000원</p>

의약품(철분제) 판매	의료기기(의료용흡인기) 판매
 <p>의약품(철분제) 판매</p> <p>20,000원</p>	 <p>의료기기(의료용흡인기) 판매</p> <p>38,600원</p>

3 중고거래 플랫폼 상 전문판매업자 신원정보 제공 현황

- 조사대상 플랫폼 4곳 중 1곳(당근마켓)은 개인판매자의 판매만 허용되었고, 3곳(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은 개인 판매자 이외 전문판매업자의 판매도 허용
 - 전문판매업자 판매가 가능한 3곳의 플랫폼은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판매코너를 두는 방법으로 개인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함.
-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게시물 중에는 사업자임에도 개인판매자로 위장하여 플랫폼 내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음.
 - * 조사대상 플랫폼 4곳은 개인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외부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판매자가 동종 품목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거나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종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로 볼 수 있음.

[전문판매자 의심 사례]

<p>동종 품목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p>	<p>동종 품목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p>

- 전문판매자 판매가 가능한 플랫폼 3곳 중 2곳(번개장터, 중고나라)의 경우 플랫폼 이용약관에 전자상거래법상 전문판매자(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1곳(헬로마켓)은 이용약관에 해당 내용이 없었음.

4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최근 3달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
*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9%p]
- (조사기간) 2022. 4. 6. ~ 4. 20.

- (이용 빈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빈도는 '월 1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28.9%(332명)로 가장 많았고, '3개월에 2~3회'가 22.3%(257명)의 순
- (주거래 품목)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생활용품'이 21.1%(243명)로 가장 많았고, '가전제품' 16.2%(186명), '의류' 13.7%(158명)의 순
- (중고거래 이유)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가 3.96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가 3.89점,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가 3.35점의 순
- (피해 경험) 거래 시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3.8%(274명)
 - (거래·상품·대금 관련) '거래 당사자 간 연락의 어려움'이 53.6%(147명), '구매 후 배송지연' 29.6%(81명), '구매 후 미배송, 일방적 거래취소' 28.8%(79명)의 순(중복응답)
 - (플랫폼 관련)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소통 어려움'이 15.3%(42명), '중고거래 플랫폼의 불량이용자 관리 소홀' 14.2%(39건)의 순(중복응답)
- (대응방법)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274명) 중 '해당 거래자에게 문의·항의 및 보상을 요청한' 응답자가 46.7%(128명),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 21.2%(58명)의 순(중복응답)
-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선점) '안전결제 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가 30.0%(345명),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330명), '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판매자 차단' 13.7%(158명)의 순
- (거래불가품목* 인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불가품목이 있음을 '인지'한다는 응답자가 54.1%(622명), '미인지'하는 응답자가 45.9%(528명)

* 법령에 의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거나(화장품 샘플, 주류, 담배 등), 판매자격이 있는 지만 판매가 가능한 품목(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수제식품류 등)

- 거래 전 물품 정보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 판매자가 미처 알리지 못한 정보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결제방법 등 거래 조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가능하면 택배거래가 아닌 대면거래를 이용하세요.
 -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 물품 상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대면 하여 물품을 확인한 후 거래하세요.
- 비대면 거래 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결제 대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 거래불가품목을 확인하세요.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불가품목을 팔거나 사지 마세요.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시, 상대방이 개인판매자가 아닌 전문판매자로 의심된다면 거래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등 소비자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품목

- 기호식품(담배, 전자담배, 전통주 외 일반 주류)
- 의약품 및 마약류(전문 및 일반의약품, 동물약품, 마약 등)
- 시력교정용 제품(도수있는 안경·콘택트렌즈 등)
-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제품(모조품, 가품 등)
- 모의총포(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 등)
- 적합성 평가 면제조건으로 해외직구 후 1년 이내의 전자제품
- 면세품(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된 제품 등)
- 헌혈증(혈액 또는 헌혈증서)
- 화장품 샘플 및 소분된 화장품

□ 판매 또는 구매 자격이 필요한 품목

- 건강기능식품(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 수제식품(수제청, 소분된 식품, 가공된 농산물 등)
- 무기류(총포, 도검, 화약, 석궁 등)
- 군 관련 용품(군용장구, 신형군복 등)

□ 리콜조치 되어 유통이 금지된 품목

- 소비자24(www.consumer.go.kr) 또는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에서 리콜조치된 제품 확인이 가능함